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9. 12. 30.(수) 09: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아날로그TV 종료 및 디지털TV 구축 방안에 관한 건 (2009-64-287)

-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아날로그TV(이하 “ATV”) 종료 및 디지털TV(이하 “DTV”) 구축 방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구축방안)** 향후 신설될 939개 DTV 보조국은 설비구축 후 700MHz대 회수대역을 포함한 임시 가용채널로 즉시 DTV 전파를 발사하여 DTV 커버리지를 확대
 - ※ KBS1 DTV 커버리지 : 86%('09년) → 91%('10년) → 93%('11년) → 96%('12년)
 - ② **(종료방법)** 1,191개 ATV 방송국은 '12년 말 전국 동시에 방송을 종료하고, 종료와 동시에 700MHz대를 회수
 - ※ 종료방법에서 당초 '일시' 종료가 '동시' 종료로 수정됨
 - ③ **(채널전환)** DTV 확정대역 외 또는 확정채널과 다르게 구축된 DTV는 ATV 종료 이전 일정기간('12. 6월~12월) 동안 확정채널로의 변경 준비를 완료하고, ATV 종료와 동시에 확정채널로 DTV 단독 전파발사

2) 700MHz 여유대역 주파수 재배치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09-64-288)

-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700MHz 여유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재배치 대상 : 총 108MHz폭
 - 회수대상인 700MHz대역(698~806MHz, 108MHz폭) 내에서 사용하는 이동방송중계, 도서통신, 무선마이크를 '12. 12월말까지 타대역으로 이전하여 향후 수요에 대응
 - ② 용도별 재배치 계획
 - **(이동방송중계)** KBS, MBC에서 마라톤 중계 등을 위해 사용중인 4개 채널을 회수하여 2GHz대역에서 3개 채널을 지정하여 이전하고, 라디오중계 1개 채널은 동일 용도로 사용중에 있는 1.7GHz대역으로 이전

- (도서통신용) KT는 제주도과 주변 섬지역 전화 서비스 연결을 위해 '06. 11월부터 8GHz대역으로 이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700MHz 시설은 예비용으로만 사용 중이므로 허가기간의 만료('11. 6월말)시 회수
-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로 분배된 740~752MHz대역을 회수하고, DTV대역(470~698MHz)과 공유하여 허가받고 이용토록 함

③ 여유대역 활용계획

- 회수되는 700MHz대역은 '13년부터 이용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10년에 700MHz 여유대역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00MHz 여유대역 이용 계획 수립시 반영

④ 손실보상

- 전파법 제7조(손실보상) 규정에 따라 기존 시설의 잔존가액,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 또는 신규이용자가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3) 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09-64-289)

- o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규칙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① 해상·항공업무용 신규 무선설비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

- 인말셋 위성을 이용하는 선박용 통신설비 중 신규로 도입되는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신설하고, 서비스가 중지된 설비에 대한 규정은 삭제
-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기 위해 등대, 암초, 부표 등에 설치되어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하는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을 신설
- 항공기, 공항설비 등에 설치되어 위치, 속도, 방향 등의 정보를 매초마다 송신하여 인근 운항 항공기의 안전을 돕는 자동감시설비의 기술기준을 신설

②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등의 변경된 국제규정에 맞춰 무선설비의 분류체계·용어 정비

- ※ 예시 : 선박용 레이더의 분류 체계 정비(500톤급 선박 기준 ⇒ 국제항해 여부 기준),
'세계 표준시' ⇒ '협정세계시',
'm당 400μV' ⇒ '400μV/m' 등

4)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2009-64-290)

○ 김재영 디지털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의무편성비율)** 지상파방송사의 고화질(HD)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방송분야별 특성과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도별('10~'13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구체화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KBS, MBC본사, SBS	70% 이상	70% 이상	75% 이상	80% 이상
EBS	65% 이상	65% 이상	70% 이상	75% 이상
MBC 계열사, 지역민방	60% 이상	60% 이상	65% 이상	70% 이상

※ 고려사항 : 방송사의 HD 제작설비 투자계획,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4~40%), 기존 프로그램의 재활용 비율(20% 내외), 방송사간의 경쟁요소 등

② **(산정방법)**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시청 시간, HD화 촉진 등을 고려하여, HD 프로그램 편성시간 산정시 가중치* (1.5배) 부여

* '주시청시간대·드라마·스포츠·다큐멘터리(공통), 13세미만 유아·어린이 교육(EBS), 자체제작 (MBC계열사, 지역민방) HD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편성시간의 1.5배로 가중하여 인정

③ **(자료제출)**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지상파방송사가 HD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실적자료를 매분기 단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5)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 (2009-64-291)

○ 최정규 편성평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함

6)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 (주)LG데이콤 '한국금융티브이' - (2009-64-292)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LG텔레콤의 (주)LG데이콤 및 (주)LG 파워콤 합병에 따라 '한국금융티브이'의 법인명을 (주)LG데이콤에서 (주)LG텔레콤으로 변경승인하기로 의결함

방송 채널명 (방송 분야)	법인명		최초 승인일 (유효기간)
	변경 전	변경 후	
한국금융티브이 (TV뱅킹서비스)	(주)LG데이콤	(주)LG텔레콤	2006. 5. 25 (2012. 5. 24)

사. 보고사항

1)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임시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 김재철 방송운영총괄과장으로부터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임시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내용
 - ① 방송의 공공성 유지, 중소방송 지원, 방송광고 거래 안정성 확보 등 지상파방송 광고 거래에 관한 권고

< 임시운영에 관한 권고 >

1.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현재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방송·광고의 공공성·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교·지역방송 등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방송광고 거래조건, 요금, 수수료 등이 공정하게 결정·지급되는 등 방송광고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것
4. 방송광고 판매 관련 분쟁 발생시 조속한 해결에 노력할 것

- ② 시장 현안 및 이해관계자간 분쟁 발생시 신속한 협의·조정을 위해 방통위 내 방송광고거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2) (주)강원방송의 재허가 조건부 이행 여부 및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주)강원방송(이하 “강원방송”)의 재허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 및 처리 방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내용
 - ① **(조건 이행여부)** 지급보증 해제에 관한 재허가 조건은 이행되었으나, 주식담보 해소에 관한 재허가 조건은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 '09. 3월 재허가 조건 : 지급보증 해제, 주식담보 해소
 - ② **(처리 방안)** 방송법 제99조에 근거하여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절차 진행

3)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안에 관한 사항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내용

① 최소 필요한 적정 공중전화대수를 산정하여 손실보전

- '09년 11월 현재 97,101대에서 17%(16,826대) 감소한 80,275대를 적정 공중전화 대수로 산정하여 손실보전을 하되,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 연도별 적정 공중전화 대수는 '08년 94,275대 '09년 87,275대, '10년 80,275대

- 산정기준은 광역사시의 경우 인구 3천명당 1대, 도농복합시군의 경우 인구 5백명당 1대이며, 이와 함께 광역사·시·도농복합시·군 모두 2Km당 1대씩 59,654대를 산정

·일률적인 인구기준 적용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과다, 시골지역은 과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

·대체 통신수단에 접근·이용이 어려운 장소인 의료시설, 관공서, 군부대, 도서·산악 지역에 현재 KT가 설치한 20,621대를 추가 고려하여 80,275대를 적정 공중전화 대수로 산정

② 콜렉트콜 수입 및 낙전수입을 공중전화 수입에 포함

- '08년도 콜렉트콜 수입(콜렉트콜 전용전화 포함)과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중전화 수입·비용에 반영

- 반영하지 않던 공중전화 낙전수입도 수입에 반영

③ 시내전화 손실보전금 산정기준 명확화

- 시내전화 손실보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회선수를 번호를 기반으로 산정하여 객관화

4)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공동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내용

- ①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개발 환경 제공 등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선제적 도입
- ②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회의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8대 시범사업 추진 등 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출현을 위한 기반 마련
- ③ 공통 인프라·플랫폼 기술 및 신뢰성 보장기술 개발 등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R&D를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및 시범사업과 연계
- ④ 관련 법·제도 정비, 보안침해 대응체계 마련과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추진 및 표준화 등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 '4개 부문 10대 세부과제'를 도출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 1. 6 (수) 10:00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50)

- ※ 10:35 정회, 10:50 속개